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50566	가맹본부 홈페이지 주소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5.05.16.	대표 이메일 주소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16.		

슈퍼크리스피

정보공개서

(주)비에스비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비에스비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86(지문리 797)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031-226-6540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1522-421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70-4450-2735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비에스비 푸드	슈퍼크리스피 외 3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86(지문리 797)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7.06	2020.08.07	정관영	1588-9109	031-226-6540
	법인등록번호	134811-0568545		사업자등록번호	518-88-0173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정관영/(주)비에스비푸드	슈퍼크리스피 외 3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86(지문리 797)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관영	1588-9109	031-226-654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청년피자 가맹본부	청년피자	2021.02.19.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416-3(반월동)	정관영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명 칭	슈퍼크리스피	
가맹점 상호	슈퍼크리스피 OO(지역명)점	

로고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1]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29,833,639	23,020,497	6,813,142	32,886,705	1,650,206	1,022,489
2023년	18,404,239	10,895,692	7,508,547	19,007,678	3,680,213	2,211,861
2022년	11,876,241	6,578,880	5,297,361	14,331,969	3,971,505	3,676,18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관영	대표	2020.07~현재	대표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6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해당 영업표지 포함)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비에스비푸드/ 정관영	가맹사업 경영	2018.3 ~ 현재	청년피자(등록번호: 20180249) 피자 가맹 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비에스비푸드/ 정관영	가맹사업 경영	2020.11.~현재	치킨인류(등록번호: 20201254)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비에스비푸드/ 정관영	가맹사업 경영	2022.8.~현재	고시해정(등록번호:20220845)라는 영업표지의 한식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본 이미지	출원번호(출원일)	등록번호(등록일)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4020220215688 (2022.11.24)	4022074790000 (2024.06.12)	(주)비에스 피푸드	2034.06.12
권리 범위	간판 및 사인물 등의 영업표지로 사용			

위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가 지정한 디자인, 사인물 등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지식재산권은 당사가 상표권의 소유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받았으며, 귀하가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슈퍼크리스피 가맹사업 현황

1. 슈퍼크리스피를 시작한 날: 해당없음

2. 슈퍼크리스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비에스비푸드	슈퍼크리스피	정관영	예정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86(지문리 797)

3. 슈퍼크리스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슈퍼크리스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슈퍼크리스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슈퍼크리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슈퍼크리스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6. 청년피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해당 영업표지 포함)

당사는 청년피자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비에스비푸드 /정관영	청년피자	20180249	피자	365/-	334/12	312/15
가맹본부	(주)비에스비푸드/ 정관영	치킨인류	20201254	치킨	36/-	22/2	30/-
가맹본부	(주)비에스비푸드/ 정관영	고시해정	20220845	한식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슈퍼크리스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해당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슈퍼크리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슈퍼크리스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해당없음	해당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슈퍼크리스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해당 영업표지와 관련하여 2024년의 광고 및 판촉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판촉	해당없음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주)비에스비푸드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주)비에스비푸드	의결(약)2023-045 (2022서가2132)	가맹사업법	인근가맹점 현행문서 미제공(제7조제3항)	2023.5.25.	시정명령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슈퍼크리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8,800	-	-	-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시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예치 대신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귀하에게 보험증권을 교부 후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800
가입비	5,500
교육비	3,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다음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33㎡)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총계	-	27,500	2,750	-	-
인테리어	협력업체 외 1	12,100	1,210	가맹계약 시 개별 계약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외 1	2,200	220		
설비 및 기기	첨부 3	8,800	880		
원부자재, 초도물품	첨부 3	4,400	440		
전산시스템	협력업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귀하의 매장에 대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 추가 공사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의탁자,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파사드,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에서 장비시설 비용은 점포 규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 중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을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할 경우 33㎡ 당 ₩2,200,000의 검수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장 면적의 증감에 따라 검수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에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로고 등 이미지의 규격, 재질 및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이 브랜드의 통일성에 따라 적정한 품질로 완성되었느냐 등을 검수하며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의 내용물이나 하자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상담→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영업지역 파악→가맹본부 동의→입지 확정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

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당사의 경영방침을 준수할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당사의 경영방침을 준수할 것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슈퍼크리스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	------	----	------	-------	----

반환불가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1,100,000원	익월10일	후불로 반환안됨
광고 분담금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가맹본부	전체수수료의 5 0%	별도로 지정한 기한	후불로 반환 안 됨 -
개점 이후 교육 훈련비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고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가맹본부	본부: 변경비용의 25% 귀하: 변경비용의 75%	-	-
시설, 각종 기기 의 교체보수비용	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 보수	-	-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 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전산시스템 사용 료	협력업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이율 20%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 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 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이자 가산	금전지급의무의 이 행 지체에 대한 지 연이자 성격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vat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단위: 천원)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재고관리	실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필요시 증감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필요시 증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회계장부 등의 매출내역을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귀하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귀하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이행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비 금삼백삼십만원(₩3,300,000 부가세 포함)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매뉴얼,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슈퍼크리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슈퍼크리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슈퍼크리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천원,VAT포함)	비고
해당없음					

2) 당사가 슈퍼크리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천원,VAT포함)	비고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카테고리	메뉴명	포장가격	배달가격
	슈퍼크리스피	슈퍼크리스피	9,900	13,900
		핫슈퍼크리스피	9,900	13,900
		양념슈퍼크리스피	11,900	15,900
		핫양념슈퍼크리스피	11,900	15,900
		소이슈퍼크리스피	11,900	15,900
		핫소이슈퍼크리스피	11,900	15,900
		치즈슈퍼크리스피	11,900	15,900
		슈퍼크리스피반마리	6,900	9,900
	사이드류	메가크런치	2,500	2,500
		크리스피핫윙	1,100	1,100
		슈퍼크런치너겟(3개)	1,800	1,800
		슈퍼크리스피버거	2,900	3,900
		슈퍼치즈치킨버거	3,500	4,500
	음료	코카콜라245ml	700	700
	추가류	피클2pc 추가	300	600
		양념치킨소스추가(70ml)	700	700
		케찹추가	100	100
제한내용 및 조건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책임	시정요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용역은 판매할 수 없음	시정요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상품 일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크리스피 치킨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슈퍼크리스피 치킨인류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가맹점의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영화관, 극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부대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슈퍼크리스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슈퍼크리스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운영하는 직영점 및 직영점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운영하는 직영점 및 직영점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슈퍼크리스피 가맹사업의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에는 1년으로 계약 기간

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6조 2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 2항~3항	25조 각 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 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 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8조~9조, 16조~17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의 교육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7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9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1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2조 1항~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2조 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3조 10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4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과 휴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27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0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1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 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1조 3~4항	
가맹점사업자가 주요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32조 각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8조 1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고용인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5조 21호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조 22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3조 제1항 제2호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조 3~4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고 교육비 금삼백삼십만원(₩3,300,000 부가세 포함)등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거나 위탁 경영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의 상속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며, 가맹점营业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을 개시하기 5일 전까지 교육비 금삼백삼십만원(₩3,300,000 부가세 포함)등을 당사에 납부하고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개점 전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교육 상태가 미흡한 경우 또는 가맹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할만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의 가맹점 영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기간 중과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자기 또는 가족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슈퍼크리스피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가족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슈퍼크리스피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크리스피 치킨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슈퍼크리스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월~금요일 14:00 - 24:00 토, 일요일 12:00 - 24:00	주 6일(금, 토, 일 휴무 불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	필수 아님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절차는 경영상의 결정에 따라 아래 내용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감독 절차	시기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일반방문→주문→친절도 확인→관리표 작성→완료	수시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품질 확인→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슈퍼크리스피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25%	광고비 75%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1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가맹점사업자수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	-
판촉행사	공동 판촉활동	기획비용	제작비용 및 할인비용	행사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1주일 내 납입
	개별 판촉활동	-	관련 제작실비 전액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월 할인금액 제시→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맹점부담액 송금
배달 어플리케이션, 카드사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비용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비용의 50%	월 비용 제시→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맹점부담액 송금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홍보물에 대하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별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별로 각각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제23조 제1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귀하가 제33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별로서 금이천만원(₩2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계된 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계약 종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35조 1~4항

손해배상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제35조에 의한 위약별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귀하에게 물품을 지원한 경우에 귀하가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가 할인 또는 면제한 금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 또는 귀하의 피고용인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 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6조 1~4항 40조 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7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D-3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0~29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9 ~ 4(2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시간 중)	D-14 ~ 9(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하고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상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바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상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 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계약이행, 표준화,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특별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슈퍼크리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매뉴얼 교육 운영교육, 입금 방법,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	실습교육 개별 또는 집단교육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경영상의 필요	개별 또는 집단교육	개별 협의	필수 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 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슈퍼크리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총40시간, 총5일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요청시 실시
재교육		1인 1일 기준 110,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교육시 출장비(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비용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출장비 내역을 귀하에게 제공하고, 귀하는 해당 출장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출장비 내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출장비 내역을 귀하가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출장비 실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끝-

<첨부1>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입강제품목

2025년 01월 31일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점 필수 품목>

※ 귀하는 아래의 품목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규격과 수량은 가맹점 실측 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비 및 기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첨부4>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